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권내건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 보도자료

2025. 11. 26.(수)

제목

### 3조 2,715억 원 규모 국내 설탕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2명 구속 기소 11명[법인 2곳 불구속 기소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제당 3사가 '21. 2.경부터 '25. 4.경까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부사장·전무급 포함 임원 4명, 실무자 5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본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 가격의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하여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으로,
  - 수사 결과, ① 제당 3사는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 ② 담합행위를 통해 **담합 발생 前 대비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되었던 사실,** ③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 하락 시에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습니다.1)
-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 차례 적발되었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던** 바,
  -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외 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중 **최고책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적 담합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하고,
  - 그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가담한 개인 총 11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 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I

## 사안의 개요

### 1 피고인 (총 13명 : 법인 2곳, 개인 11명)

○ 법인 2곳, 개인 11명 (2명 구속, 9명 불구속) (총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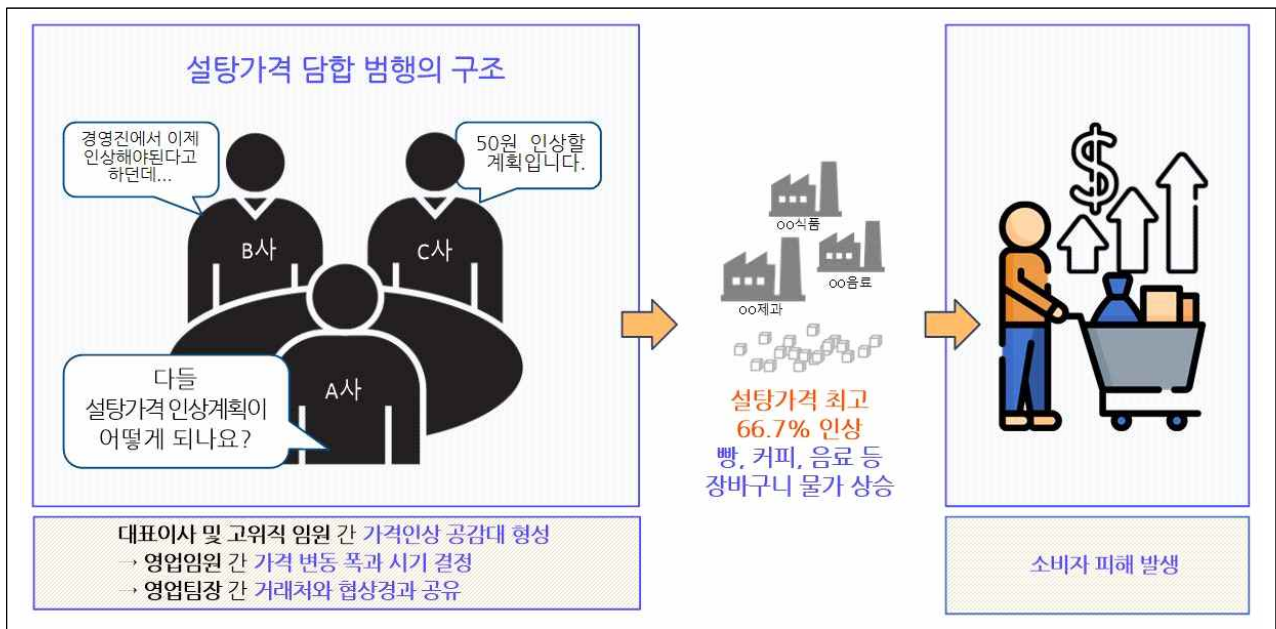
- A법인 및 임직원 5명 [가○○(前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구속), 나○○(B2B 사업 본부장, 전무급), 다○○(영업상무급), 라○○(영업팀장), 마○○(곡물구매 사업부장)]
- B법인 및 임직원 6명 [바○○(식품그룹 대표이사, '25. 11. 21.자로 사임, 구속), 사○○(식품그룹 부사장), 아○○(前영업상무), 자○○(영업상무), 차○○(前영업팀장), 카○○(前곡물팀장)]

###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1. 2.경부터 '25. 4.경 사이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공정거래법위반】

※ 단, '25. 4.경 마지막 담합 범행은 해당 2개 사(A, B 법인)만 가담 / 각 피고인별 세부 범죄사실은 [별지] 참조

### 3 이 사건 담합 범행의 구조



1) 해당 3사는 '21. 1. 기준 원당가 386원이 '23. 10. 기준 801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720원에서 1,200원으로 신속히 인상한 반면, '23. 10. 기준 원당가 801원이 '25. 4. 기준 578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설탕 가격을 1,200원에서 1,120원으로 소폭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해당 3사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

## II

## 수사 경과

- '25. 9. 서울중앙지검, 사건 접수
- '25. 9. 17.~ 제당 3사 및 사건관계인 압수수색 등
- '25. 10. 10. 공정위 고발장 접수(1차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법인 3곳)
- '25. 10. 17. 공정위 고발장 접수(2차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개인 6명)
- '25. 11. 13. 공정위 고발장 접수(3차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개인 5명)
- '25. 11. 19. 가○○(A법인 前 대표), 바○○(B법인 대표) 구속영장 발부
- '25. 11. 26. A, B 법인(2곳) 및 개인 11명 기소(2명 구속, 9명 불구속)

## III

## 수사 의의

### ① 검찰의 신속한 직접 수사를 통해 제당업체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범행의 실체를 규명

- 그간 담합 사건 수사는 국제적 트렌드와 달리 담합 근절에 실효성 없는 범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또는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쳐, 담합의 본질적 근절에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 이런 반성적 고려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본건 담합의 실체를 신속히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무 임직원은 물론 담합에 직접 가담한 대표이사 등 고위직 임원의 범행까지 규명하여 총 11명의 개인 가담자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특히 검찰은 신속·정확한 직접 수사를 통해, 강제수사 개시 두 달 만에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여 '담합범행을 하여 서민 경제를 교란시킨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② 막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한 국내 설탕가격 담합 범행 엄벌

○ 제당 3사는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 가격의 폭과 시기를 담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한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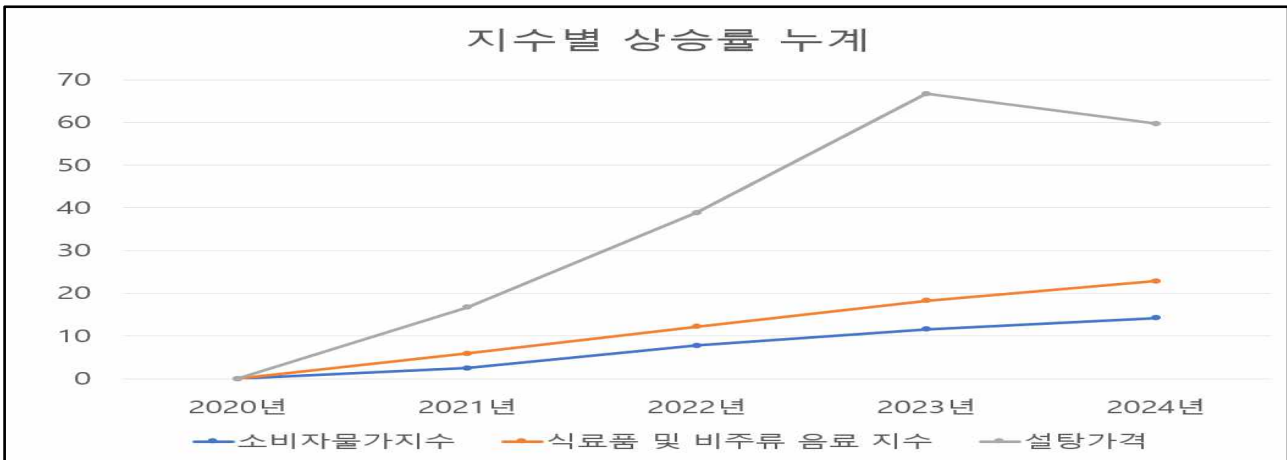
- 범행 기간 동안 설탕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3. 10. 기준)되었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前 대비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5. 4. 기준).

구분	20.1.~21.4	21. 5.경	21. 9.경	22. 3.경	22. 11.경	23. 6.경	23. 10.경	24. 7.경	25. 4.경
변동금액 (1kg당)	-	40원↑	80원↑	70원↑	90원↑	120원↑	80원↑	50원↓	30원↓
판매가격 (1kg당)	720원	760원	840원	910원	1,000원	1,120원	1,200원	1,150원	1,120원
'20년 대비 인상률	-	5.5%↑	16.7%↑	26.4%↑	38.9%↑	55.6%↑	66.7%↑	59.7%↑	55.6%↑

○ 특히, '20년~'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20년~'24년 기준 소비자 물가 14.18%,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22.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출처 :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2025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中 발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2024년 누계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00.00	102.50 (2.5%↑)	107.72 (5.1%↑)	111.59 (3.6%↑)	114.18 (2.3%↑)	14.18%↑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상승률)	100.00	105.89 (5.9%↑)	112.15 (5.9%↑)	118.29 (5.5%↑)	122.87 (3.9%↑)	22.87%↑
설탕가격(원) (상승률)	720	840 (16.7%↑)	1,000 (19.0%↑)	1,200 (20%↑)	1,150 (4.2%↓)	59.7%↑



### ③ **담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공정위)과의 긴밀한 협력**

-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공정위와 고발요청 범위 등을 협의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 향후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인 공정위에 본건 공소장 등 자료를 송부하여 공정위의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기초생활품 등 서민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 IV **향후 계획**

-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검찰은,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 주요 공소사실 요지

□ 은 구속기소

구 분	공소사실 요지	비고	
A사 (5명)	가○○ (前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22. 1.~'25. 4. 제당업체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3차 고발요청
	나○○ (B2B사업본부장, 전무급)	'21. 2.~'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다○○ (영업상무급)	'21. 2.~'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라○○ (영업팀장)	'21. 2.~'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마○○ (곡물구매 사업부장)	'24. 5.~7.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3차 고발요청
	A법인	'21. 2.~'25. 4.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
B사 (6명)	바○○ (식품그룹 대표이사, '25. 11. 21. 사업)	'22. 1.~'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3차 고발요청
	사○○ (부사장)	'22. 1.~'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3차 고발요청
	아○○ (前영업상무)	'21. 2.~'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자○○ (영업상무)	'21. 2.~'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차○○ (前영업팀장)	'23. 2.~'2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2차 고발요청
카○○ (前곡물팀장)	'24. 5.~7.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3차 고발요청
B법인	'21. 2.~'25. 4. 소속 임직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1차 고발요청